

의안 번호	1288	【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 일자 : 2016. 11. 11(금)
- 나. 제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6. 11. 16.(수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6. 11. 28.(월)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적용시한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대행 개정(안 제6조제2항)
 - 구정조정위원회 → 공유재산심의회
- 나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개정(안 제7조제1호~제3호)
 -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
 -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등
- 다. 기금의 적용시한 개정(부칙 개정)
 - 2017년 12월 31일 → 2022년 12월 31일

4.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조, 제13조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
 - 「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」에 따라
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적용시한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
개정하는 것으로

- 2016. 10. 4부터 10. 24까지 입법예고 실시로 주민의견을 들었
으며,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
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< 관 계 법 령 >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**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**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

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-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기금운용심의위원회"라 한다)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**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**하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, 장소, 참석자,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